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 협약서

1. (목적) 이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 **○○○** (이하 “실습기관”), **실습생 성명** (이하 “실습생”), 이화여자대학교 (이하 ‘학교’) 삼자간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상호 협력) 실습기관은 폭넓은 현장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하고, 해당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 등이 지도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아울러, 실습을 위한 기계 등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실습기간) ①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실습일은 주 5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시간에는 실습 불가

4. (실습 장소) 으로 정함.

5. (실습 부서 및 업무) 으로 정함.

6. (실습지원비)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매월 원을 일에 학생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단,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지각·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시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7. (산업안전보호)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실습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보험가입)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성희롱예방)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실습과정에서 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10. (복리후생 지원)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11. (과제 수행) 실습생은 주차별로 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시 실습전

반에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평가) 실습기관에서는 실습 종료 시 학교와 협의한 평가내용에 따라 실습평가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증명서 발급) 실습기관은 학생이 요구하는 경우 체험과정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14. (현장실습 협약 해지 및 참여 제한)실습기관이 현장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습생에게 부당한 처우 및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협약을 해지하고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5. (기타) 학교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실습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 (준용)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삼자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실습기관’, ‘실습생’, ‘학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실습기관)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실습생) 생년월일

성 명 (인)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 주임교수 조 제 원 (인)